

2001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0. 11. 25 동두천시장이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0. 12. 1
- 다. 상정일자 : 제103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설명, 질의답변  
제7차 본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하녀 2001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함.

나. 주요골자

- 기금별 수입 및 지출계획

(단위:천원)

기 금 명	2001년 수입	2001년 지출	비 고
계	4,790,768	4,790,768	
지방채상환기금	1,705,215	1,705,215	
애향장학기금	1,158,738	1,158,738	
체육진흥기금	459,236	459,236	
자립장학기금	105,999	105,999	
노인복지기금	681,597	681,597	
주민지원기금	118,189	118,189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236,173	236,173	
재해대책기금	253,092	253,092	
재난관리기금	72,529	72,529	

3. 전문위원 검토보고

2001년도 기금은 금년 8월 9일 제정공포된 동두천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등에 의한 지방채 상환기금외 8종으로, 2001년도 운용규모는 2000년도 이월액 2,364백만원, 출연금 2,206백만원, 이자수입 221백만원등을 합해 4,791백

만원이 되며, 이중 214백만원은 2001년도에 사용하고 4,577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적립될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현행 지방자치법 제133조는 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또한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에서는 자치단체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